

EU 7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EU, 미국산 콩 수입량 전년 대비 280% 증가

- 출처: 유럽위원회 (2018.08.01) http://europa.eu/rapid/press-release_IP-18-4768_en.htm

- 유럽위원회는 EU대두 수입량 최신 수치를 발표함. 2018년 7월 미국 대두의 수입 점유율은 전년도 동기대비 283% 증가함
 - EU 대두의 총 수입량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대두는 36만 톤으로 전체의 37%를 차지함
- EU는 단백질식품으로 닭, 돼지, 소 및 우유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식품뿐만 아니라 대두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
 - 현재 유럽은 수요를 만족시킬만한 양의 대두를 자체 생산할 수 없어 연간 약 3 천만 톤의 대두를 수입함
- 미국산 대두와 콩가루는 유럽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 수입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음
 - 미국산 콩가루의 수입은 2018년 7월 약 10만 8천 톤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대비 약 3.3% 증가함
- 2017년 EU의 대두 총 수입량은 약 백만 톤으로 브라질 67%(1위), 파라과이 17%(2위), 미국 9%(3위)순으로 점유율이 높았으나 2018년에는 브라질 52%(1위), 미국 37%(2위), 우루과이 4%(3위)로 수입국 순위에 변화를 보임

2.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승인 및 관련 부속서 개정

- 출처: EUR-Lex(2018.07.26) 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EXT/?qid=1533668022313&uri=CELEX:32018R1060>

- 트리플록시스트로빈과 관련한 식물 보호제품¹⁾ 취급에 관한 규정 Regulation

- (EU) No 540/2011은 2018년도 7월 31일 기한 만료됨
- 이에 따라, 트리플록시스트로빈의 지속적인 취급을 위해서는 새로운 식물 보호제품 취급에 관련한 규정 (EU) 2018/1060에 따라 ‘사용권한 갱신 신청’ 이 필요함
 - 갱신 신청절차 마련을 위하여 유럽 내 관련 기관과 식품안전청(EFSA,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) 연구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이 2016년도 9월 29일 출범함
 - 해당 위원회는 2018년도 3월 23일, 트리플록시스트로빈의 사용권한 갱신을 위한 평가기준으로 식물 보호에 관련한 규정 (EU) No 1107/2009의 조항4를 준행한다고 발표함
 - 또한 해당 물질의 취급권한 갱신의 신청기준로는 (EU) No 844/2012의 조항6을 준행한다고 발표함
 - 이에 따라, 해당물질의 취급권한 갱신 신청자는 (EU) No 844/2012의 6조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 및 제출함
 - 트리플록시스트로빈의 취급권한 갱신에 관련한 규정은 2018년 8월 1일 공식화되고 그로부터 3일 후 효력이 발생함

〈 취급용법 관련 부속서 II 〉

활성물질명 및 고유번호	IUPAC 명	순도	승인일	만료일
Trifloxystrobin CAS No 141517-21-7 CIPAC No 617	methyl (E)-methoxyimino-[(E)-α-[1-(α, α,α-trifluoro-m-tolyl)ethylidene aminooxyl]-o-tolyl]acetate	≥ 975 g/kg AE 1344136 (max.4g/kg)	18.08.01	33.07.31

3. 노벨푸드 관련 규정 개정

-출처: EUR-Lex(2018.07.23)

<https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?qid=1533668022313&uri=CELEX:32018R1023>

- 노벨푸드의 실행에 관련한 새로운 규정 (EU) 2018/1023이 2018년도 7월 23일부터 도입됨
 - 해당규정은 등록된 노벨식품 통일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며, 기존의 노벨푸드 실행규정 (EU) 2017/2470의 내용을 수정·대체함

1) 식물보호제품: 살충제, 생장조절물질 등 농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

- 또한 그간의 유럽연합 주관으로 실행되었던 관련 규정 ① (EU) 1169/2011 및 해당규정의 수정 버전인 ② (EU) 2015/2283, 유럽연합과 유럽위원회 주관아래 실행된 (EC) No 258/97을 철폐하고 도입된 ③ (EC) No 1852/2001 중 ‘통일 리스트 마련’에 관련하여 언급된 일체의 내용을 대체함
- 새로운 노벨푸드 실행에 관한 규정은 작년에 도입된 규정 (EU) 2017/2470이 공식화 되고 난 후에도 여전히 노벨푸드 사용환경 및 세부규정 집행과 관련한 다수의 오류와 생략이 있었다고 여겨짐에 따라 새롭게 마련됨
 - 예를 들어, 2017년 12월 19일 Regulation(EC) 258/97의 제 5조에 따라 세 포배양에서 추출한 노벨푸드 ‘에키네시아(Echinacea purpurea)’가 신고 되었으나, 해당 실행규정의 목록에는 오류로 포함되지 않았음. 새롭게 규정된 식품은 Regulation(EU) 2017/2470의 부속서 I, II에 추가 등재되었어야함
 - 노벨식품 ‘2-푸코실올리고당(2-Fucosyllactose)’은 이미 규정 Regulation (EU) 2017/2470의 부속서 II에 포함되어 있지만 매개변수의 수치 값을 잘못 등재하여, 수정하여 갱신하여야 함
 - 노벨푸드 글루코사민 HCl은 Regulation(EU) 2017/2470의 제 5조에 따라 특정 사용조건 하에서만 허가되나, ‘어린이를 위한 우유 및 유사제품’ 식품목록에 잘못 추가되어 있어 삭제해야함. 부속서 I에 있는 글루코사민 HCl 항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임
 - 노벨푸드 ‘Lacto-N-neotetraose’는 유럽위원회 결정 Decision (EU) 2016/375(4)에 의해 특정 사용조건 및 최대허용수준에 따라 허가되었음. 하지만 세부사항인 ‘1.2 g/l 까지의 농도’라는 규정은 잘못 기재 되었 으며 ‘어린이를 위한 우유 및 유사제품’이라는 식품목록에도 오류로 추가되어 삭제되어야함
 - 노벨푸드 ‘Spermidine-rich 밀 배아 추출물 (Triticum aestivum)’은 규정 Regulation (EC) 258/97의 제 5조에 따라 ‘임신 및 수유부를 제외한 성인’을 위한 특정 사용조건 하에 허가되었으나, 임신 및 수유중인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오류이며, 배제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이 요구됨
 - 노벨푸드 ‘균에서 배양된 키토산 추출물 Chitosan extract from fungi (Agaricusbisporus; Aspergillus niger)’은 Regulation(EC) No 258/97의 제 5조에 따라 특정 사용 조건하에 허가되었음. ‘지방 결합력: 800 x 9 w/wet weight: 통과’라는 요구 사항은 ‘지방 결합력: 800 x (W/W wet weight): 통과’로 대체되어야 함

- 노벨푸드 ‘토마토에서 추출한 리코펜’은 Regulation (EC) No258/97 제 5항에 따라 특정 사용 조건 하 ‘식품보충제’로 허가됨, 하지만 식품 목록 ‘식품 보충제’에서 생략되어 해당 항목이 추가되어야 함
- 이 밖에도 수정이 요구되는 문서상의 오류가 발생함에 따라, 기존의 노벨푸드 집행에 관한 규정 Regulation (EU)2017/2470의 부속서 전체를 대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새로운 규정 (EU) 2018/1023이 마련됨
- 해당 규정은 유럽연합관보에 공포된 날(2018.07.23)부터 20일째 되는 날부터 효력을 발효함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- 없음

III

통관문제 사례·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발생일자	통관번호	HS code	상품명(제조사)	중량(kg)	불합격사유	조치사항
2018.07.06.			건조미역		성분부적합 (요오드 함량 기준치* 초과)	소비자리콜

*기준치 : 20 mg/kg ppm

해당 회차 함량 요오드: 375.5 mg/kg ppm

※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